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1086
----------	------

제출년월일 : 2002.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도로법에 의하여 가로수 관리조례가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법률 제6477)되고,
- 도시 조경수준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확대지원이 필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 필요성이 있으나 기존의 가로수 관리조례로는 부족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 조경시설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녹지·가로수의 조성 및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안산시 행정구역내 녹지·가로수·보호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토록 함 (안 제2조).
- 다.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시설과 식물을 말함 (안 제3조).
- 라.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조경시설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마.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등의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 바. 관리청은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식재 10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15조).
- 사.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산림조합법 제46조 및 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9조).

- 아.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30조).
- 자. 관리청은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 회귀나무, 대형목, 회귀림 및 고령림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의 관리근거를 마련함 (안 제35조).
- 차. 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7조).

제정조례안 : 별 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산림기본법 제18조
- 도로법 제67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입법)예고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2. 10. 2. ~ 10. 23.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 첨

- 방침 결정문 1부.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안산시 관내의 녹지·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와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보호수, 녹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라 함은 관련법령 등에 의거 가로수·보호수·녹지 등을 관리하는 시 소속기관의장을 말한다.
2. “관리담당자”라 함은 가로수·보호수·녹지 등을 관리하도록 관리청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녹음제공 등을 통하여 생활·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 생태계의 연결성유지 등을 이루기 위하여 시가지 및 하천변 등의 가로변에 조화있게 심는 나무를 말한다.
4. “갱신”이라 함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보식”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가 있던 곳에 새로운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벼름 시설물을 말한다.
7. “가로수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가로수보호덮개”라 함은 식수대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9. “가로수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의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10. “나무은행”이라 함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
 -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사랑, 조경석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제2장 녹지의 보호관리 및 녹화추진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지의 보전과 녹화의 추진 등에 관한 기본구상
2. 집중녹화지구, 각종사업장, 균린공동녹화 등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4조 (녹지현황조사)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녹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 (조경시설의 관리) ①관리담당자는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수목의 바로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5. 기타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②관리담당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6조 (나무은행) ① 관리청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거 여부를 판단하고 제거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재건축·재개발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계획구역내 기준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녹화지원)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 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협정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와 건축법 제3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② 관리청은 독지가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창문화단 녹화와 벽면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와 건축법 제3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녹화장려) ①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괘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등의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내의 토지소유자,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참여) ①관리청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수목·수림의 등록관리) ①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수림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수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수목·수림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등록된 수목·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등록된 수목·수림의 소유자는 도시의 자연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등록된 수목·수림의 유지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수목·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수림을 제거,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고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관리의 지원) ①관리청은 등록된 수목·수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등록된 수목·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가로수의 조성·관리

제14조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관리청은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

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 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기본계획은 매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안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안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각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복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1미터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한다.
3. 중앙분리대 등 기타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한다.

제17조 (가로수의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 가. 식재간격은 6내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한다. 다만,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이 상 식재할 수 있다.
 -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식재한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식재한다.

제18조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하여 차폐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20조 (갱신 및 보식) ①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21조 (가지치기) ①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가로수 가지치기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위탁할 수 있다.

③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는 가지치기·갱신·보식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는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약제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관리청은 필요할 경우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방제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책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립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 다.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 라.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책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하여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가로수 관리시설물)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및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개·보수를 포함한다)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한다.

제26조 (점검) ①관리청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대상은 생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④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식재·보식·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27조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보호틀 또는 보호대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 ③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④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

26(부록)

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또는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 (훼손자부담금) ①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훼손자부담금의 별표 2와 같다.

제30조 (원인자부담금) ①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산정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정수할 수 있다.

제32조 (관리의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협

의에 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3조 (가로수관리대장) ①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가로수 관리대장은 관리청별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장 보호수의 지정 관리

- 제34조 (보호수·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 ①관리청은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희귀림 및 고령림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수림을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보호수가 보호수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35조 (보호수·보호수림의 유지관리) ①보호수·보호수림의 관리자는 보호수·보호수림이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수·보호수림의 보호구역내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성토·상하수도시설·도로시설·건축 등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36조 (보호수·보호수림의 지원) ①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공원녹지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공원녹지과장 유 범 규
	담당·팀장 직위·성명	녹지담당 박 교 원
	담당자 성명·전화	박 교 원 (행정 2411)

〈별표 1〉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제15조제2항 관련)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별표 2〉

훼손자·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제29조, 제30조 관련)

훼손자 부담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3/1 이상 ※ 작업비 :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원인자 부담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식을 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비 + 이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비 :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 2. 제거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비 + 제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
※ 비 고	
도급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수목 등 재료비 포함) 적용하여 설계된 공사비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예치금예치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예치금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087
------------	------

제안년월일 : 2002. 11. 14.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 수정 이유

- 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내용 중 일부 불합리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녹지보전과 녹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녹화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주 요 골 자

-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녹화추진및가로수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함.
- 안 제6조(나무은행) 제3항 중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제사항으로 판단되어 “사업자와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
- 제21조(병충해의 방제) 제5호 중 병충해 방제를 위해 가로수 줄기에 감았던 짚이나 새끼 등의 잠복소는 소각하는 것으로 수정.
- 제32조(가로수관리대장) 제1항 중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노선별 관리대장을 수기 대장이외에 전산화 할 수 있도록 규정
- 녹지보전과 녹화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녹화심의위원회를 신설함(제5장)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안산시녹화추진및가로수에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산시의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 환경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를 “사업자와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다음에 “보조를 받아”를 삽입한다.

제14조제2항 중 “단축할 수 있다”를 “단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리청이 가로수를 식재할 때 검수하는 가로수 구비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제5호 중 “방제할 수 있다”를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 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건축 등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제40조로 하고,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녹화심의위원회

제36조(녹화심의위원회) ①녹화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규정에 의한 녹지의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33조 규정에 의한 보호수·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도시녹화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인

2. 건설교통국장

3. 산림, 임업 및 자연환경 또는 도시녹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32조(가로수관리대장)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 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u>〈후단 신설〉</u></p> <p>②(생략)</p>	<p>제32조(가로수관리대장) ①..... </p> <p>이 경우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②(원안과 같음)</p>
<p>제34조(보호수·보호수림의 유지관리) ①(생략)</p> <p>②보호수·보호수림의 보호구역내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성토·상하수도 시설·도로시설·건축 등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p> <p><u>다만, 도시계획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생략)</p>	<p>제34조(보호수·보호수림의 유지관리) ①(원안과 같음)</p> <p>②..... <u>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u> <u>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u>〈단서 삭제〉</u></p> <p>③(원안과 같음)</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5장 녹화심의위원회</u></p>
	<p>제36조(녹화심의위원회) ① 녹화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 규정에 의한 녹지의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원 안	수정안
	<p><u>4. 제33조 규정에 의한 보호수·보호수령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u></p> <p><u>5. 기타 시장이 도시녹화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u></p> <p><u>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u>1. 시의원 2인</u></p> <p><u>2. 건설교통국장</u></p> <p><u>3. 산림, 임업 및 자연환경 또는 도시 녹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u></p> <p><u>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u></p> <p><u>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u>제3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u></p> <p><u>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원 안	수 정 안
<u>〈신 설〉</u>	<p><u>제38조(회의)</u>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u>〈신 설〉</u>	<p><u>제39조(수당 등)</u>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제36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40조(시행규칙)</u>.....</p>